

#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기술지원프로그램 지원기업 통합 모집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핵심주력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 및 입주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기술지원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인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바이오헬스케어\* 기반 생태계 조성 및 입주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지원

\* 바이오신약(백신), 혁신신약, 스마트 헬스케어, 신기술 의료기기, 바이오소부장 등 바이오헬스케어 전후방 기반 산업을 포함한 기반조성

\*\* 바이오헬스케어 기반 전후방 벤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육성 선도

### 나. 지원대상(신청자격)

-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내 입주(본사, 공장, 기술연구소 등) 또는 입주예정\*인 의료·바이오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입주 예정 기업 : 6개월 이내 입주 증빙 자료 제출 必

### 다.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4. 10. 31일 이내

\* 선정 이후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협약 기간에 기준함

### 라. 접수기간 : '24. 5. 21. ~ '24. 6. 10.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천TP,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가.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구분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규모 (세금미포함)	지원기관	비고
기술개발지원	인증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성능 및 신뢰성 평가</li> <li>■ 인증 및 표준화</li> </ul>	○ 개사 (700만원이내)	인천TP	
	기술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기능 개선 및 제조공정 개발지원</li> </ul>	○ 개사 (700만원이내)		
	IP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에 대한 선행 특허분석 및 특허 회피 전략보고서 작성 지원</li> <li>■ 선행 특허분석, 특허맵 작성</li> <li>■ 지적재산권 획득</li> </ul>	○ 개사 (700만원이내)		
	제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설계, 디자인, 포장 제작 지원</li> </ul>	○ 개사 (700만원이내)		

※ 제품별로 지원 분야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 수행계획을 2-1, 2-2, 2-3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원분야에 대하여 작성(개별평가)

\*예시1) A제품의 사업화를 위하여 기능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술자문)을 받은 후 설계 제작 지원(제품개선)을 신청하는 경우, 2-1 사업수행계획-기술자문, 2-2 사업수행계획-제품개선으로 신청)

※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 및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업별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음

## 3. 신청방법

### 가. 접수방법

-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또는 BizOK 지원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BizOK 접수

### 나. 상담 및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사업내용 관련 문의 및 상담

지원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재)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권순일	032-260-0833	soonil@itp.or.kr
	정예솔	032-260-0838	ysjeong@itp.or.kr

## 4. 지원일정 및 절차

가. 추진일정 : '24. 5. 20. ~ 11. 15.

구분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참여기업 선정	사업 신청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24. 5. 20.
	참여기업 신청접수 (BizOK 접수) ↓	인천테크노파크	'24. 5. 21. ~ 6. 10.
	참여기업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인천테크노파크	'24. 6월 중
	평가결과 통보 ↓	인천테크노파크	'24. 6월 말
서비스 지원	서비스 필요내용 협의 및 계약 ↓	인천테크노파크	'24. 7월 초
	사업 수행 ↓	인천테크노파크	협약일 ~ '24. 10. 31.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인천테크노파크	협약종료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인천테크노파크	검수 완료 후 2주 이내

※ 추진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나. 추진절차 (지원방법)

- 협약체결 및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외)제출 등 필요조건 충족 후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금은 과제 결과보고서 접수 및 검토 후 기업에 직접지원

※ 공급가액의 10%를 민간부담금으로 산정하고, 최종제출 서류에 따라 최초 지원금 사용계획보다 감소할 수 있음

※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5. 평가 및 선정기준

### 가. 평가방법 및 기준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에서 심의 결정
  - 1차평가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 2차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의·평가
- 평가기준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기업일반 (20)	기업역량	- 지원기업의 특허출원 및 수상실적	10
	기업의 안전성	- 기업의 안전성 및 성장성(재무평가)	10
수행계획의 타당성 (60)	제품 경쟁력	- 개발(또는 개선) 제품의 특성, 경쟁력이 기존 제품 대비 차별성 보유 유무	10
		- 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과 수익성	10
	신청내용의 적정성	-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전 제시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 주요산업 또는 신산업과의 부합성	20
		시급성	- 기술개발, 애로 해결의 시급성
기대효과 (20)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10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기술개발, 고장 감소 등 기술적 효과 등	10
우대사항		- 최근 2년 직·간접수출 5만불 이상	1
		- 인증브랜드 제품 보유기업	2
		-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선정 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2
		- 사회적 약자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2
합 계			100(+7)

※ 우대사항 해당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 나. 선정 및 결과 통보

- 평가위원회의 결과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발생 시 심사기준 항목의 순서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결정
- 선정결과는 기업에 개별통보하며, 필요 시 현장실사 및 서류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6. 제출서류

NO	제출 서류	비 고
1	사업신청서 (법인 인감 날인)	첨부양식
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양식
3	참여제한 자가진단서	첨부양식
4	보안서약서	첨부양식
5	경제자유구역 입주 증명 서류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첨부양식
6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제출기한 내)	
7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8	견적서 (지원 건에 대한 2개사 이상의 복수견적)	각사양식
9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사양식

※ 입주 예정기업의 경우 5번 서류 대신 6개월 이내 입주 증빙 자료 제출.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 7. 유의사항

### 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할 수 있음

## 나.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사전검토) 제1항 관련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지원(신청) 제외 대상

1.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과제の内容이 사업공고 상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기개발·기지원과의 차별성) 기술지원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3. (참여제한 여부)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5. (파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6. (부도·채무불이행)
  - ①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 ③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7. (타 사업 중복지원) 동일 애로사항 해결, 동일 시험·컨설팅 등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동일 건에 대한 중복지원 적발시, 환수 등 필요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